

변경대비표(일반 및 자펀드)

1. 대상 펀드:

no	펀드명	보수변경	결산	변동성	변경사항
1	미래에셋EasternEURICs업종대표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○	-	-	-
2	미래에셋Eastern유라시아업종대표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○	-	-	-
3	미래에셋동유럽업종대표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○	-	-	7), 9)
4	미래에셋동유럽업종대표증권투자신탁2호(주식)	○	-	-	7), 8), 9)
5	미래에셋러시아업종대표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○	-	-	-
6	미래에셋러시아인덱스증권투자신탁(주식)	○	-	-	3), 8)
7	미래에셋브라질러시아업종대표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○	-	-	-
8	미래에셋연금러시아업종대표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○	-	-	7), 9)
9	미래에셋퇴직플랜동유럽업종대표40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○	-	-	7), 9)
10	미래에셋퇴직플랜러시아인덱스40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)	○	-	-	-
11	미래에셋BRICs업종대표장기주택마련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-	○	○	8)
12	미래에셋BRICs업종대표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-	○	○	6), 8)
13	미래에셋G2이노베이터증권투자신탁(주식)	-	-	-	8)
14	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다이나믹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(채권)	-	○	○	-
15	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인컴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○	○	-
16	미래에셋맵스미국부동산투자신탁9-2호	-	○	-	8)
17	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	-	○	○	2), 6), 7), 8), 9)
18	미래에셋전략배분TDF솔루션혼합자산투자신탁	-	○	-	-
19	미래에셋차이나솔로몬증권투자신탁2호(주식)	-	-	-	8)
20	미래에셋차이나심천100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(주식-파생형)	-	○	○	6), 8)
21	미래에셋퇴직플랜BRICs업종대표40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○	○	8)
22	미래에셋하나1Q퇴직연금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○	○	-

2. 변경 사항:

- 1) 집합투자업자보수 변경(한시적 인하)
- 2) 환매수수료 삭제
- 3) 가입자격 변경
- 4) 펀드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
- 5)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업데이트
- 6)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문구 변경
- 7) 법 개정사항 반영
- 8) 이해관계인 삭제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명 변경

9)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

3. 효력발생예정일: 2022년 9월 29일 (목)

4. 변경 내용:

1) 집합투자업자보수 변경(한시적 인하)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부칙	<신설>	<p><u>제1조 (집합투자업자보수 한시적 인하) ① 제 3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,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의 설정 청구 및 환매 청구를 재개하는 날의 전일까지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보수율은 [아래 참조1]으로 적용한다.</u></p> <p><u>②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환매 연기 사유가 해소된 후 이 투자신탁의 설정 및 환매를 재개할 수 있으며, 그 사실을 집합투자업자,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홈페이지에 공시한다.</u></p> <p><u>③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적용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, 자본시장법 제 188조 제2항에 따른 수익자총회 결의 및 집합투자규약 제41조에서 정하는 신탁계약의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<u>제2조 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2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요약정보 투자비용	<신설>	<p><u>※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의 한시적 인하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① 이 투자신탁은 2022년 9월 29일부터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의 설정 청구 및 환매 청구를 재개하는 날의 전일까지 이 투자신탁의 모든 종류 수익증권에 대한 집합투자업자보수율을 한시적으로 연 [아래 참조 1]를 적용합니다.</u></p> <p><u>②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환매 연기 사유가 해소된 후 이 투자신탁의 설정 및 환매를 재개할 수 있으며, 그</u></p>

		<p><u>사실을 집합투자업자,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.</u></p> <p><u>③ 제 1 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적용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, 자본시장법 제 188 조 제 2 항에 따른 수익자총회 결의 및 집합투자규약 제 42 조에서 정하는 신탁계약의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합니다.</u></p>
제2부. 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<신설>	[2022.09.29] 집합투자업자보수 한시적 인하에 관한 사항 신설
제 2 부.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[종류형 구조]	<신설>	<p>※ <u>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의 한시적 인하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① 이 투자신탁은 2022 년 9 월 29 일부터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의 설정 청구 및 환매 청구를 재개하는 날의 전일까지 이 투자신탁의 모든 종류 수익증권에 대한 집합투자업자보수율을 한시적으로 연 [아래 참조 1]를 적용합니다.</u></p> <p><u>②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환매 연기 사유가 해소된 후 이 투자신탁의 설정 및 환매를 재개할 수 있으며, 그 사실을 집합투자업자,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.</u></p> <p><u>③ 제 1 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적용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, 자본시장법 제 188 조 제 2 항에 따른 수익자총회 결의 및 집합투자규약 제 42 조에서 정하는 신탁계약의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합니다.</u></p>
제 2 부.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	

[참조 1]

펀드명	변경 전 집합투자업자보수율 (%)	변경 후 집합투자업자보수율 (%)
미래에셋 EasternEURICs 업종대표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<u>0.9</u>	<u>0.45</u>
미래에셋 Eastern 유라시아업종대표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<u>0.9</u>	<u>0.45</u>
미래에셋동유럽업종대표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<u>0.9</u>	-
미래에셋동유럽업종대표증권투자신탁 2 호(주식)	<u>0.5</u>	-
미래에셋러시아업종대표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<u>0.9</u>	-
미래에셋러시아인덱스증권투자신탁(주식)	<u>0.2</u>	-
미래에셋브라질러시아업종대표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<u>0.9</u>	<u>0.45</u>
미래에셋연금러시아업종대표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<u>0.66</u>	-
미래에셋퇴직플랜동유럽업종대표 40 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<u>0.4</u>	<u>0.24</u>
미래에셋퇴직플랜러시아인덱스 40 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)	<u>0.255</u>	<u>0.153</u>

2) 환매수수료 삭제

-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39조 (환매수수료)	<p>①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 (제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 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)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)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.</p> <p>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, 이하 본 항에서 '이익금'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</p> <p>1. 종류A 수익증권 90일미만:이익금의 70% 90일 이상 180일 미만:이익금의 30%</p> <p>2. 종류A-e 수익증권 90일미만:이익금의 70% 90일 이상 180일 미만:이익금의 30%</p> <p>3. 종류AG 수익증권 90일미만:이익금의 70% 90일 이상 180일 미만:이익금의 30%</p>	<p>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</p>

	<p><u>4. 종류C1 수익증권</u> 180일 미만:이익금의 70%</p> <p><u>5. 종류C2 수익증권</u> 180일 미만:이익금의 70%</p> <p><u>6. 종류C3 수익증권</u> 180일 미만:이익금의 70%</p> <p><u>7. 종류C4 수익증권</u> 180일 미만:이익금의 70%</p> <p><u>8. 종류C5 수익증권</u> 180일 미만:이익금의 70%</p> <p><u>9. 종류C-e 수익증권</u> 180일 미만:이익금의 70%</p> <p><u>10. 종류CG 수익증권</u> 180일 미만:이익금의 70%</p> <p><u>11. 종류C-2 수익증권</u> 180일 미만:이익금의 70%</p> <p><u>12. 종류직판F 수익증권</u> 180일 미만:이익금의 70%</p> <p><u>13. 종류S 수익증권</u> 180일 미만:이익금의 70%</p>	
--	---	--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환매수수료>	<p>[A, A-e, AG] 90 일미만:이익금의 70%</p> <p>90 일 이상 180 일 미만:이익금의 30%</p> <p>[C1, C2, C3, C4, C5, C-e, C-2, 직판 F]</p> <p>180 일 미만:</p> <p>이익금의 70%</p> <p>[CG, S] 180 일 미만:이익금의 70%</p>	환매수수료 없음

3) 가입자격 변경

펀드명	변경 전	변경 후
종류 C-I	<p>법인세법 시행령 17 조의 2 의제 8 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투자자,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,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(중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) 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100 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 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</p>	<p>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(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 포함), 법 시행령 제 10 조제 2 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-4 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(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), 100 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 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</p>

5)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업데이트

펀드명	변경 전 등급	변경 후 등급	변경 전(%)	변경 후(%)
미래에셋BRICs업종대표장기주택마련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	2	2	<u>20</u>	<u>21.93</u>
미래에셋BRICs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	2	2	<u>19.49</u>	<u>21.86</u>
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다이나믹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채권)	5	5	<u>3.54</u>	<u>3.87</u>
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인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4	4	<u>9.59</u>	<u>10</u>
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	2	2	<u>19.24</u>	<u>20.21</u>
미래에셋차이나심천1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-파생형)	2	2	<u>24.18</u>	<u>21.7</u>
미래에셋퇴직플랜BRICs업종대표4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4	4	<u>7.38</u>	<u>8.29</u>
미래에셋하나1Q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<u>5</u>	<u>4</u>	<u>4.84</u>	<u>5.06</u>

6)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문구 변경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부. 12. 나.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(1) 평가방법	<p>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</p> <p>③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 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</p> <p>⑦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<u>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.</u> 다만,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</p>	<p>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(<u>해외상장 주식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</u>)</p> <p>③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 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(<u>해외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</u>)</p> <p>⑦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(<u>외국집합투자증권은 평기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기준가격</u>) 다만,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(<u>해외상장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</u>)</p>

7) 법 개정사항 반영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13조(자산운용지시 등)	<p>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 1 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<u>투자신탁재산으로</u>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 64 조제 1 항에</p>	<p>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그 <u>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</u> 하여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</p>

	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하다.
제42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	<p><u>①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.</u></p> <p>②~③ <생략>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<u>①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 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 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~③ <생략></p> <p><u>④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외의 사유로 수익자 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</u></p>

8) 이해관계인 삭제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명 변경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4부. 1. 가. 회사의 개요	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 중 집합투자업자의 주요 이해관계인 현황 - <u>일반사무관리회사 :</u> <u>미래에셋펀드서비스</u>	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 중 집합투자업자의 주요 이해관계인 현황 <u><삭제></u>
제4부. 4.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	회사명: <u>미래에셋펀드서비스(주)</u>	회사명: <u>한국펀드파트너스(주)</u>

9)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

[집합투자계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조(용어의 정의)	<신설>	- “ <u>고난도금융투자상품</u> ”이라 함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.

제53조(고난도금융투자상품)	<신설>	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-----------------	------	---

*상기 변경사항에 대한 집합투자규약 조항 번호는 펀드 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, 변경 내용은 동일함

미래에셋자산운용(주)